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경고) · 통보

제 목 소방안전실무교육 미이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처분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훈 계 (경 고) ① 울산광역시 ○○본부 ○○○○○○대 지방○○○ ○○○
대 상 자 (전 울산○○본부 ○○○○과)

② 울산광역시 ○○본부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3. 10. 28.부터 2015. 10. 4.까지 울산광역시 ○○본부 ○○○○과, 지방○○○ ○○○은 2016. 1. 4.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본부 ○○○○과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등 관련 업무 담당하였으며, 울산중부·남부·동부소방서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관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등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포함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고, 같은 법률 제20조에 의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보조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를 동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 정지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소방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본부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업무는 그 특정 소방대상물을 관할하고 있는 소방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중 [표1]과 같이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415명('15년 351명, '16년22명, '17년 42명)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표1] 2015~2017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처분 현황

연 도	계	중 부	남 부	동 부	온 산	비 고
2015	351	130	148	44	29	
2016	22	13	4	3	2	
2017	42	18	20	1	3	

※ 울산광역시(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울산광역시 ○○본부에서는 연도별 업무정지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처분일을 기준으로 30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이수여부 또는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관계인에 대한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업무정지처분된 소방안전관리자중 [표2]와 같이 ○○소방서 14건, ○○소방서 24건, ○○소방서 13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 적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기타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는 13명에 대하여도 정확한 현지 확인을 하지 않고 소방대상물의 경매·소송 등 사유를 들어 적정 행정처분 없이 소방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2015년~2017년도 업무정지 처분자중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대상

관 서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 처분이후 조치결과				비 고
		교육이수	안전관리자 변경	미 확인	기 타	
○○소방서	161	84	59	14	4	
○○소방서	172	86	25	54	7	
○○소방서	47	27	3	13	4	
○○소방서	34					

※ 울산광역시(○○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됨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¹⁾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²⁾의 규정에 따르면 사전 당사자에게 처분의 제목, 의견제출 기한 등의 사항이 적시된 “처분사전통지서”(별지8호)를 작성 해당 관서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경우에

1)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 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 기한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제8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는 ①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본부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중 총 415명('15년 351명, '16년 22명, '17년 42명)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지시킨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훈계(경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은 물론, 업무정지 처분 이후 처분 대상에 대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 지방○○○ ○○○, 지방○○○ ○○○에 대하여 훈계(경고)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현지 미확인 및 과태료 처분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울산○○·○○·○○소방서 예방업무 담당자(실무자, 책임자 전체)에 대한 적정조치 및 업무정지처분 이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실무교육 미이수, 안전관리자 재선임 등을 소홀히 한 관련 대상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등 처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